



제2차 가정폭력 방지 월례 포럼

|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지원시설 협업 발전방안 |

| 일 시 | 2017. 7. 24.(월) 15:00

| 장 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



PROGRAM

좌장 : 정윤경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시 간		내 용
		개 회
15:00-15:15	15'	- 인사말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축 사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내빈 소개
		발 제
15:15-15:35	20'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 지원시설 간 협업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15:35-16:20	45'	- 가정폭력피해자 초기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지원시설 협업 현황 및 개선 방안 1. 이용욱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 계장) 2. 양수옥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회장) 3.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16:20-16:35	15'	휴 식
16:35-17:25	50'	종합토론
17:25-17:30	5'	폐 회



CONTENTS

발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 지원시설 간 협업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	1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가정폭력피해자 초기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지원시설 협업 현황 및 개선 방안	23
1. 이용욱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 계장	25
2. 양수옥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장	29
3.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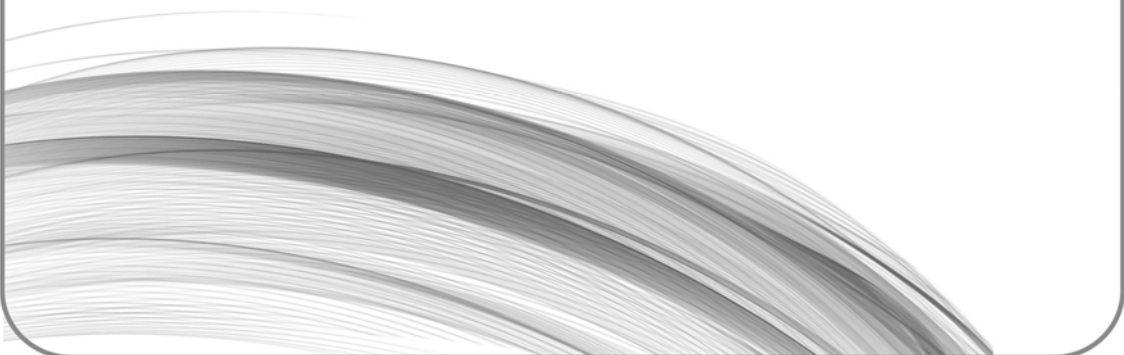


발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 지원시설 간 협업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 지원시설 간 협업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

윤덕경¹⁾

1. 들어가며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적절한 초기대응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 개시와 함께 처벌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위하력을 제고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여 가정폭력을 제지함으로써 가정폭력 상황을 종식시키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경찰의 가정폭력 초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긴급임시조치, 현장 출입·조사권, 재범위험성 조사표 작성 등 가정폭력 현장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사하고 긴급하게 가해자에 대한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경찰과 피해자 지원시설간 협업이 이루어 진다면 피해자에게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시설간 협업체계는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다루어 지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시론적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²⁾.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본 발제원고는 윤덕경·이미정·이인선·김상운(2014),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윤덕경·이인선·(2015),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제98차 양성평등정책포럼」자료집, 2015.1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내용을 발췌, 보완한 것임.

II.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초기대응 현황 및 한계

1.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현황

가.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범죄를 정의하는 것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상에 ‘가정폭력’을 정의해 놓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하며,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위와 같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정의 아래에 가정구성원 내에 이루어지는 범죄, 즉 가정폭력 대상 범죄는 다음<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김상운, 2014:13).

〈표 1〉 가정폭력 대상 범죄

구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유형	사자명예훼손, 모욕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주거·신체수색,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상기죄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		

나. 가정폭력범죄 현황

1) 가해자 검거 및 가정보호사건 송치 현황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경찰의 가정폭력 검거건수와 검거인원, 가정보호사건 송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

며,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검거건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132%)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 40,822건을 기록하고 검거인원도 47,549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해자 폭력성행 교정을 위한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도 15,710명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457%)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집안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가정폭력 직무교육과 인식전환 교육으로 인해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대응의 증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긴급임시조치, 현장출입·조사 신설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체제의 구축, 여성청소년 수사팀 신설, 전수합심조사 등을 통한 가정폭력 엄정대응 기조로 가정폭력범죄 사법처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³⁾

〈표 2〉 가정폭력 검거 및 가정보호사건 송치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검거건수	검 거 인 원			가정보호사건 송치
		계	구 속	불구속	인 원
'13년	16,785	18,000	262	17,738	1,579
'14년	17,557	18,666	250	18,416	2,819
'15년	40,822	47,549	606	46,943	15,710
전년대비	132.5% ↑	154.7% ↑	142.4% ↑	154.9% ↑	457.3% ↑

출처: 경찰청, 2016 경찰백서, p.127.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35/2016/2016_02_1.pdf)

다. 경찰단계에서의 가정폭력범죄 대응

1) 현장 출입·조사

가정폭력 신고 접수에 최초로 대응하게 되는 경찰은 신고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이때, 여타 범죄와 달리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현장 출입·조사’ 권한을 법률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바로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이다. 위 법률 내용에는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의 ‘가택출입 지침’과 가정폭력의 ‘현장출입 조사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

3) 경찰청(2016), 2016 경찰백서, p.127.

된다. 현재 가택출입(강제출입)의 법적 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⁴⁾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형사소송법」⁵⁾ 제12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외에도 강제출입과 관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와 「형사소송법」 제126조가 병행하여 그 근거로써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김상운, 2014:17).

2)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경찰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 조치 중 가장 적극적으로 현장 경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된다. 특히 현장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초동조치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행사되도록 규정되어져 있는 만큼 가장 직접적인 현장 경찰관의 조치로 가정폭력은 경우에 따라서 살인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초기단계에서 확실하고 명확해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조치로 규정된 4가지 사항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 응급조치 내용 등을 기재한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상담소·보호시설 연계는 2013년 7,100건에서 2014년 13,738건으로 93.5% 증가하고 2015년에도 21,342건으로 2014년에 비해 55%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인도는 2013년 3,768건에서 2014년 4,919건으로 30.5% 증가하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8.4%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부 아쉬운 것은 사실상 경찰의 응급조치는 위 2개의 조치 외에도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에 착수하며,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하는 추가 조치가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에는 위 두 조치가 생략되어 있어 나머지 관리되지 않는 응급조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었다.⁶⁾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경찰관직무집행법」[법률 제12600호, 2014.5.20. 일부개정, 2014.11.21. 시행]

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형사소송법」[법률 제12899호, 2014.12.30. 일부개정, 2014.12.30. 시행]

6) 경찰청(2016), 2016 경찰백서, p.129.

〈표 3〉 최근 3년간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응급조치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의료기관 인도
'13년	7,100	3,768
'14년	13,738	4,919
'15년	21,342	5,334
전년대비	55% ↑	8.4% ↑

출처 : 경찰청, 2016 경찰백서, p.129.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35/2016/2016_02_1.pdf)

3)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에서는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행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 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후 임시조치를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2015년 기준 전년도 대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현황을 보면 긴급임시조치 신청은 2013년 1,002건에서 2014년 1,046건으로 변화가 적으나 2015년 2,312건으로 전년대비 대폭 121%증가하였다. 또한 임시조치 신청은 2013년 3,789건에서 2014년 3,378건으로 소폭 상승하고 2015년 6,488건으로 전년대비 9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2011년 10월 긴급임시조치를 도입하였으나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제재의 실효성 한계를 인식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4년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여성청소년 수사팀의 적극적인 현장대응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수치가 증가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⁷⁾

7) 경찰청(2016), 2016 경찰백서, p.131.

〈표 4〉 최근 3년간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현황

(단위 : 건)

구분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신청
'13년	1,002	3,789
'14년	1,046	3,378
'15년	2,312	6,488
전년대비	121% ↑	92% ↑

출처 : 경찰청, 2016 경찰백서, p.131.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35/2016/2016_02_1.pdf)

긴급임시조치권의 판단기준으로 특히 재범위험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 경찰관에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임시조치권 행사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역경찰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조은경·허선주, 2013:105). 재범위험성 조사표 내용은 크게 당해사건 심각성, 피해자 심리상태, 가정폭력 전력, 가해자 성격, 심리적 특성으로 분류하고 평가문항을 폭행 심각도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긴급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김상운, 2014:20).

결정문항도 폭행심각도 상 이거나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한 경우, 폭력 지속의 두려움, 3회 이상 가정폭력 전력 등 4개의 결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총점과 상관없이 위 결정문항 중 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대상으로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총점 13점 중 7점 이상을 고위험군 가해자로 분류하고, 조사자 의견란을 추가하여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객관적 평가와 함께 주관적 판단을 종합하여 재발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근거로 고위험군 가해자로 판단되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현장 경찰관이 작성해야 할 서류로는 다음〈표 5〉와 같다.

〈표 5〉 긴급임시조치 행사시 작성 서류

구 분	작성서류
긴급임시조치행사시 작성서류	1. 응급조치보고서 2. 긴급임시조치결정서 3. 긴급임시조치확인서 4.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5. 긴급임시조치통보서 6. 가정환경조사서(가해자 조사부서) 7. 임시조치신청서(형사계 작성 서류)

4)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와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김상운, 2014:26).

위 임시조치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신청 후 결정, 집행까지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긴급임시조치 행사 이후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임시조치 결정전까지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임시조치 신청 보다는 긴급임시조치 이후 단계의 임시조치 신청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임시조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검거 건수	임시조치	
		경찰신청	법원허가
'11년	6,848	255(3.7)	189
'12년	8,762	702(8.0)	541
'13년	16,785	3,803(22.7)	2,967
'14년	17,557	3,378(19.2)	2,599
'15년	40,822	6,488(15.9)	5,117
'16년	45,614	5,702(12.5)	4,658
전년대비	11.7% ↑	12.1% ↓	9.0%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2017)

경찰의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임시조치 신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12.1% 감소한 상황이다. 전체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 중 임시조치를 신청한 비율은 2011년 3.7%,에서 2013년

22.7%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 2016년 12.5%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가정폭력 초기대응의 주요한 수단인 임시조치신청 비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고 하겠으며,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임시조치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정폭력 대응의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임시조치 신청 후 결정까지의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 실효성 약화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임시조치 청구 및 결정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찰 또한 위와 같은 문제점의 인식 하에 긴급임시조치권을 적극 행사하여, 임시조치 자체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김상운, 2014:27).

5)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 송치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가정폭력범죄로써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지휘를 받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송치할 수 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다.

특히 가정폭력범죄에 특별한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종결 중 하나인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해자는 벌금이나 징역처럼 일반적인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총 8개의 보호처분⁸⁾으로 나뉜다(김상운, 2014:27).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사건화 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피해자 처벌의사나 고소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해자가 교화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김상운, 2014:28).

8) 보호처분 :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정폭력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⑥ 보호시설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 치료위탁 ⑧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위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2. 한계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시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상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임시조치를 위한 가해자 임의동행 상 문제를 들었다. 긴급임시조치권 행사는 형사사법 활동과는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경찰이 위 권한을 행사할 경우 가해자 대상으로 일정한 제지나 인치, 임의동행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적인 서류절차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가해자에 대한 일시적 격리장소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긴급임시조치 행사로 인해 가해자는 자신이 평생 거주하였던 공간에서 즉시 퇴거 등 격리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므로 당장 갈 곳이 없는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셋째,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부재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5조(과태료)는 긴급임시 조치 또는 임시 조치를 받은 자가 일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이나 준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

넷째, 경찰단계에서의 긴급임시조치 처리절차상의 문제점이다. 긴급임시조치 행사를 위한 지역경찰 작성서류가 많은 편이고, 형사계가 아닌 지역경찰이 현장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며, 장시간 지구대·파출소에서 위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또 다른 112신고 대응조치가 부실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상 긴급임시조치신청권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예방경찰작용으로 파악하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구분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

다섯째, 긴급임시조치 최종 결정시 검사 경유로 절차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임시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고 가해자의 인신구속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의 신청 이후 검사 청구, 판사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적으로 지체될 수 밖에 없다.

Ⅲ. 가정폭력 초기대응시 경찰과 지원시설간 협업의 필요성

1. 경찰 및 피해자 지원단체 현장실무자 조사 개요

경찰관 및 피해자 지원단체 현장실무자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찰 대상 조사내용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 보기 위해 서울권, 경기권, 경상권, 충청권의 9개 기관을 방문, 경찰관 26명을 면접하였다(2014.11.5. ~ 2014.11.20). 파출소나 지구대는 가정폭력 발생시 초기출동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경찰서의 형사과는 조사를 담당하며, 여성·청소년과나 여성보호계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파출소, 지구대, 형사과, 여성·청소년과를 고르게 선정하였다.

피해자 지원단체 실무자조사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실무자가 생각하는 경찰의 초기대응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실무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2014.11.3. ~ 2014.11.21.). 현장실무자 면접은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1366센터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면접참여자는 상담소 10명, 보호시설 2명, 1366센터 3명이었다. 현장실무자는 지역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지역은 서울 2명, 경기도 3명, 부산 4명, 대구 1명, 충청도 3명, 전라도 2명이었다.

이 설문조사에서 기관간 연계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경찰과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알아본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2. 경찰조사 결과

가. 기관연계 현황

경찰서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들간의 연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1366이나 쉼터 등과의 연계가 신속하게 이루어 지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급하거나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쳐 있을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들을 위해 쉼터 등으로 데려다 주거나 쉼터 쪽에서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66은 보통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1366으로 먼저 신고하신 분들도 있다. 장기쉼터나 급하게 구해야 할 때는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래도 그쪽이 체계가 제일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다. 여성가족부 그쪽에서 해서 그런가?(A경찰서 C경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지역 사회 기관 연락처는 저희 컴퓨터에 기관이나 연계될 수 있는 전화번호 다 있다. 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연락해서, 가까워요. 다리만 건너면, 거기는 1366 여성쉼터도 있다. 저쪽 가면 쉼터가 대부분이고 상담소는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전화로 상담하고 아니면 피해자에게 직접 이런 기관이 있으니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세 요 라고 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직접 받는 경우는 없다(N과출소 P경위).

아동보호기관의 피해자 지원사례는 좋은 사례로 소개되었다.

서울에서 아동폭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협소하고 사람이 여섯 명 밖에 없는 데도 열정적으로 왔었다. 여섯 명이 세 개 구를 맡고 있는데 새벽에 왔었다. 하지만 그 분들이 당부는 했다.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되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전화를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경찰서에 와서 교육도 하시고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한 경험이 있다. 좋은 것 같다(H지구대 P경사).

일반 주민들은 보호시설, 상담소 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시설의 기능과 지원가능한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잘 이용하는 편이라고 한다.

일반 주민들은 시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경찰이 설명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쉼터도 있고 비밀보호도 철저히 된다. 상담도 받고,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되니까 가서 상담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해준다. 예전에는 당연히 집에 가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르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인식이 깨어있어서 굳이 내가 집에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늘이 아니라도 다음에라도 상담을 받으라고 연락도하고 관리하는 편이다(N경찰서 P과장).

한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에 상담원을 상주하여 사건진행전에 부부상담 등을 받게 하고 사건 진행을 하는 방안을 기획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담소에서 올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시도해 볼직할 안이라고 생각한다. 상담소의 상담인력 등 인적 자원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진행을 하기 전에 부부가 무조건 부부상담을 받게 한 이후에 사건 진행을 하게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상담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처음에 사건이 돼

서 들어오면 경찰서에 상담원을 한 명 상주는 것을 기획했었다. '바로 상담을 먼저 해보고 상담원을 파견내지 상주를 시켜서 원스톱으로 상담을 먼저 해보고 사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상담원이 없다. 이 지역 전체에 부족하다(D경찰서 H경위).

나. 문제점

1) 보호시설 연계의 어려움

많은 경우 경찰과 보호시설간 연계가 잘 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컨대 보호시설이나 상담소가 경찰과 지역기관 연계에 소극적이거나 시간적으로 새벽에는 연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연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진다고 하였다.

병원 또는 Y지역 1366으로 연락취하고 장소는 비공개로 한다. 경찰이 직접 연계 할 수 없는데 보통 피해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상담소나 센터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또한 지하철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새벽에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많고 지체 장애자 등은 가기가 어렵다.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Y지구대 K대장).

또한 상담소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피해자가 이용해 보았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은 상담소 연계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나가서 여성긴급지원센터나 이런 데 전화를 해봤자 그쪽에서 출동식으로 나와서 도와준다는 이런 시스템은 없다. 모든 게 우리가 데려다 주고 상담 연계해주고 그쪽 자체는 모든 상담소가 안내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나마 전문가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 하에 전화해서 여건이 되면 나오셔서 진짜 심각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개입을 해서 피해자 진정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할 만한 전문가가 없거나 인력이 적은 것 같다(H지구대 P경사).

가정폭력이 한번 신고된 경우가 있고 또 신고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얘기를 한다. 처음 접하니까 경찰이 안내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라는 게 있다고 설명을 한다. 왜냐하면 가짜야 별 볼일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한다. '상담소 가면 두 분이 같이 가서 상담 받으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라고 안내를 해도 대부분 대답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H지구대 P경사).

2) 경찰서 보호시설의 활용도가 낮음

최근에 경찰서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소가 마련되어 있다. 모텔이나 여관을 보호소로 꾸며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텔, 여관 등의 특수성과 이미지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설치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기존의 모텔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작 피해자들은 보호소에 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다. 노출을 꺼리고, 심적으로 불편해서 인 듯하다. 친척집, 친구 집 등에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하고 보호소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Y파출소 J경위, H지구대 P경사).

3. 피해자 지원단체 실무자 면접결과

가. 경찰 초기대응상의 문제점

경찰 초기대응상의 문제점으로 피해자 지원단체 실무자들은 지원기관으로의 연계와 협력 미흡을 들고 있다.

현장실무자들은 최근 경찰의 상담소, 1366 센터 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으로의 연계와 협력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경찰이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후에 피해자에게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기관에 연계하기보다, 피해자를 경찰이 마련한 임시보호처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현장실무자들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긴급임시조치 실적 위주의 조치이며, 지원기관으로 연계시에 기관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연계를 꺼린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나.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개선점

경찰의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의 연계시스템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정폭력 사건의 초기대응에 있어서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야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경찰은 피해자

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현장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와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와 연계의 역할을 해야 하며, 지원기관은 연계받은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사정을 통해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기관의 임시피난처로 인도해야하며, 거리상의 문제로 지원기관의 임시피난처로 인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안으로 경찰에서 마련한 모텔 등의 피난처에서 임시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피해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보다, 피해자가 지원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의무적으로 지원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역할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경찰이 신고가 와서 대응을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담소나 쉼터에 대한 안내를 다 해야죠. 그런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그날 밤을 어떻게 보호할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66이 가까우면 긴급피난처가 있으니까 연계가 되는데, 멀리 있으니까 공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모텔이나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정비해야 된다는 거가 우리가 접근해야 할 하나의 문제고, 그리고 그 역할 규정을 하룻밤만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두든지 그날 하룻밤만... 현장에 대응을 해서 분리를 해서 그날 밤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이분들에게 충분히 상담소나 쉼터나 이런 국가에서 서비스나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고지시켜주고,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고지를 시켜주는 것 까지가 경찰의 역할이라는 거죠(참여자 4, 쉼터 시설장).

4. 소결

경찰관 및 피해자 지원단체 실무자 조사에 의하면, 양 주체간 연계에 관해서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단체 모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찰서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들간의 연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고 보호시설, 상담소 등의 정보에 관해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도 잘 이용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2016년 가정폭력 피해자조사에서도 경찰이 취한 조치로 기관안내를 1순위(77.7%)로 들고 있어 경찰의 피해자와 피해자보호지원체계 연

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이인선 외, 2016:50). 또한 경찰조사 중 여성청소년수사팀 대상조사에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경험⁹⁾을 갖고 있는 것이 높게 나타났고(94.7%), 지역경찰의 경우는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75.3%)(이인선 외, 2016:84, 93).

본 경찰관조사에서는 보호시설 연계가 어려운 경우로 경찰은 보호시설이나 상담소가 피해자 연계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시간적으로 새벽에 연계해야 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2016년 경찰조사에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피해자가 연계를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44.9%), ‘인력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를 기관에 데려다 주기 어렵다’(22.8%), ‘가까운 곳에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연계기관이 없다’(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연계를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42.8%), ‘가까운 곳에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연계기관이 없다’(26.9%), ‘인력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를 기관에 데려다 주기 어렵다’(16.4%), ‘이 기관들이 연계에 소극적이다’(10.9%)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이인선 외, 2016:85, 94).

2013년 경찰조사와 비교하면 지구대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관 연계시 가장 어려운 점을 질문한 결과 ‘가까운 곳에 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없다’는 45.4%, ‘인력부족으로 피해자를 기관에 데려다 주기 어렵다’는 38.7%, ‘이 기관들이 연계에 소극적이다’는 14.3%로 나타나 (황정임 외, 2013:508), 지역경찰의 경우 어려운 점을 느끼는 정도의 비율이 2013년에 비해 낮아져 기관연계를 위한 인프라나 인력부족 등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피해자가 연계를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가정폭력 초기대응 관련 정책수립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본 피해자 지원단체 실무자조사에서는 최근 경찰이 상담소, 1366센터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일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미흡해 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경찰이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후 피해자에게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보다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보호처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 현장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와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와 연계의 역할을 해야 하고, 지원기관은 연계받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

9)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경험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한 경우만 응답하였음(이인선 외, 2016:84)

적인 사정을 통해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찰과 피해자 지원단체는 양 주체간 연계의 필요성에 관한 전체적인 방향성은 대체로 공감을 하지만 역할분담에 관해서는 지원단체가 좀 더 뚜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초기대응에 관해 양 당사자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1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할 수는 없으며,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 보완과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Ⅳ. 가정폭력 초기지원시 경찰과 지원시설의 협업관련 개선방향

1.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강화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하는 여청수사팀 및 지역경찰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이외에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2016년 경찰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유관기관의 연락처를 인지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계를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기관연계시 어려운 점의 높은 비율로 나타난 부분과 관련하여 지역기관 연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지역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소·보호시설 등의 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결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주변에 상담소·보호시설이 부족한 상황 등은 2016년 경찰조사에서 조금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기관연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연계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이인선 외, 2016:100-101).

본 피해자 지원단체 실무자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의 연계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정폭력 사건의 초기대응에 있어서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현장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와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와 연계의 역할을 해야 하며, 지원기관은 연계받은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사정을 통해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기관의 임시피난처로 인도해야하며, 거리상의 문제로 지원기관의 임시피난처로 인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안으로 경찰에서 마련한 모텔 등의 피난처에서 임시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보다, 피해자가 지원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의무적으로 지원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찰과 지원기관의 협업 관련 개선사항

가. 협업을 위한 효과적인 역할 분담

초기대응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과 지원기관(상담원)간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협업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상호 이해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 보호(권리 고지 + 지원기관에 안내 및 연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지원기관은 연계받은 지원 제공, 사후관리 등을 분담하고 있다.

협업을 하다 보면, 중첩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상호역할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나. 협업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 : 지원체계의 현장상담 기능 강화

초기대응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된 상황 (혹은 피해자의 안정을 위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발생현장)에 바로 가서 피해자를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임시거처 등을 제공하는 등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1366 이외에 다른 지원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구조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1366도 광역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서 가해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1차적인 피해자 보호 제공 이후의 개입을 위한 지원기관의 현장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 협업 역량 강화 : 직무교육 강화 및 협업 워크숍 확대

(직무교육 강화 : 전문화) 협업의 성공요인 중 하나가 자기역할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도이다(황정임외, 2014:15). 이는 협업의 토대이자 상호신뢰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원기관은 위기상담, 전문상담, 사례관리, 자원 발굴/동원 및 연계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개입 등에서 업무역량을 갖춰야 한다.

(협업 워크숍 확대 : 소통과 공유) 협업의 성공요인은 목표가 공유되어야 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황정임외, 2014:14). 협업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일정한 방향과 목표를 지향하는 가운데, 정보를 공유하며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방향과 목표에 대한 공유, 서로의 역할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워크숍이나 정기회의 등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국 협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것이다.

라. 협업을 위한 모니터링과 환류 강화

협업은 실무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 양상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협업의 내용, 방법, 수위 등은 각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협업을 하나의 유형이나 방법으로 정형화하거나 논하기 어렵다. 개별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결국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현재도 1366을 중심으로 경찰과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의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상호 역할에 대한 공유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협업사례에서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점검,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 등과 같은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협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갈등관리, 협상, 혁신과 변화 등을 통해 협업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류) 모니터링 결과가 실질적으로 협업과정의 개선과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개선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더불어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3.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가정폭력사건은 예방과 상담, 수사, 사후 관리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경찰을 비롯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유관기관에 연계하고자 하여도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거나 상담소·보호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우철문, 201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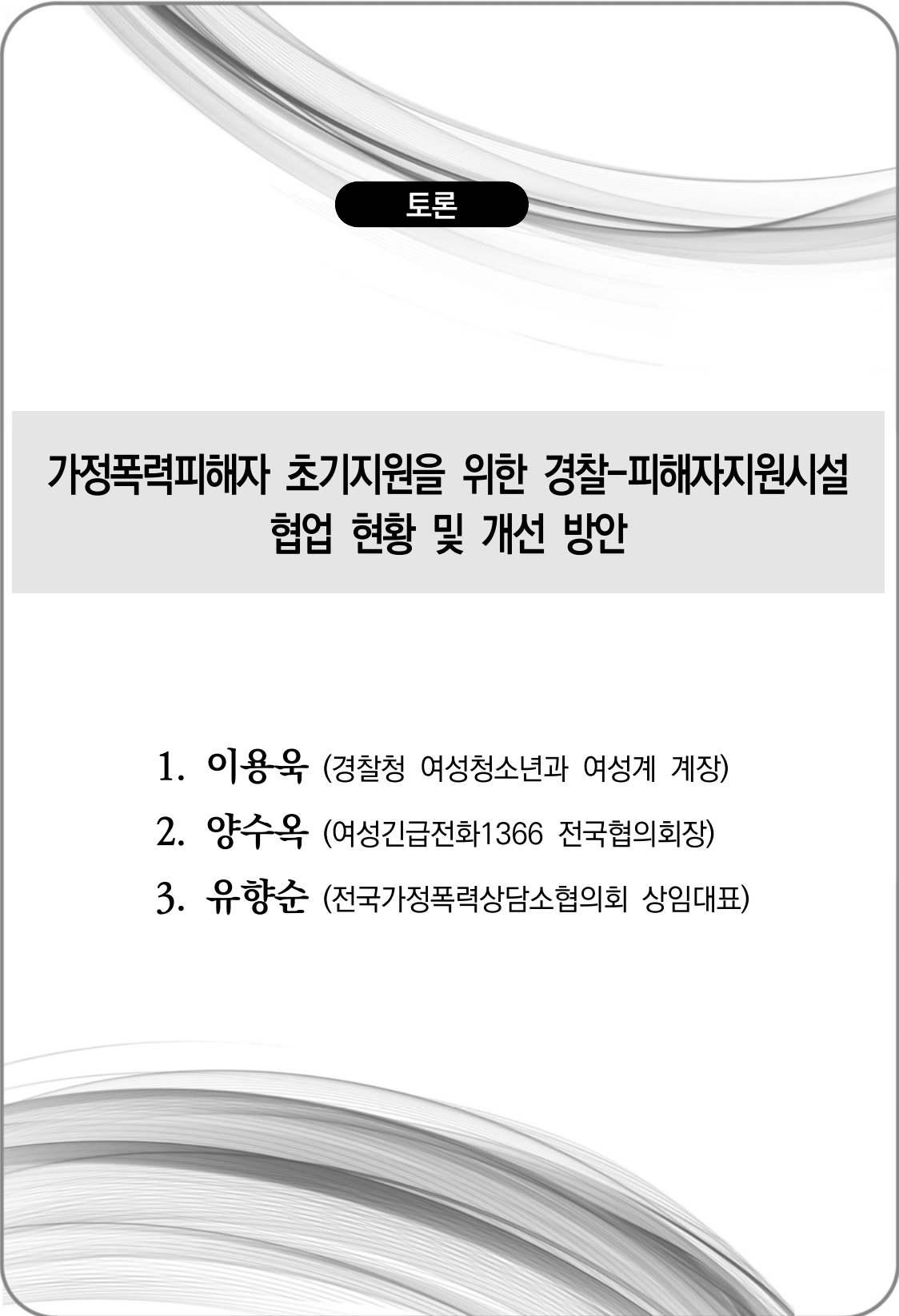
가정폭력과 관련된 업무 중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는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1366센터 등 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업무로 이루어 져야 한다.

조직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해자에게 최적화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1366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이광석, 2015:52).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1366센터의 사후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보호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사례를 참조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후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마련하도록 하는 안도 유사한 생각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하겠다. 아동학대의 경우 사건발생시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이 기관은 피해아동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며, 상호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아동복지법」 제27조의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를 두고 있다. 반면에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으로 연계기관이 나누어져 있고,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효과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사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경찰의 초기대응, 사건수사와 가정폭력 유관기관의 피해자 보호, 사후 관리의 상호 전문성을 갖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우철문, 2017:94).

〈참고문헌〉

- 김상운(2014), 「한국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 미국·영국·독일·일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우철문(201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현장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과제”,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6.23., pp.89-103.
- 윤덕경·이인선 (2015),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제98차 양성평등정책포럼, 2015.1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덕경·이미정·이인선·김상운(2014),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덕경·박복순·황의정·김차연·정선영(2014),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Ⅲ) :여성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인선·장미혜·황정임·이미정·주재선·유숙영·김상운·정수연(2016), 「2016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수사·사법기관 조사」,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5),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의 협업 발전방안 모색”, 2015 해외 전문가 초청 가정폭력방지 토론회, 2015.9.8.
- 황정임·장혜경·윤덕경·김영란·주재선·이인선·정수연·정춘숙(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부가조사」, 여성가족부.
- 황정임·정재훈·김보영·이호택(2014),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협력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경찰청(2016), 「2016 경찰백서」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35/2016/2016_02_1.pdf).
- 경찰청(2017), 경찰청 내부자료.



토론

가정폭력피해자 초기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지원시설 협업 현황 및 개선 방안

1. 이용욱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 계장)
2. 양수옥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장)
3.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방안 연구

이용옥¹⁾

1. 들어가며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경찰의 초기대응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폐·반복되는 특성상, 그간 경찰은 한번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가정폭력 검거) '13년 16,785건(구속 262명) → '16년 45,619건(구속 498명)(171.8%↑)

↳ (가정폭력 재범률) '13년 11.8% → '16년 3.8%(8.0%p↓)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의 가정폭력 정책 또한 기존 '재범 억제'에서 '적극적인 사건 대응' 기조로 전환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검거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해나가려고 한다. 반면, 현장에서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1366센터·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연계하는 데 있어 여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경찰의 연계가 이전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피해자 지원기관 간 어떠한 협업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1)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

II.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지원을 위한 경찰-지원기관 간 협업 개선방안

1. 경찰 - 지원기관 간 피해자 보호시스템 구축 필요

현행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경험·지식이 없는 현장 경찰에게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 지원기관을 선택적으로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폭력 사건처리 시 애로사항〉

- ▶ 대상 : 서울청 지역경찰(가정폭력 초동조치 담당, 2,481명)·여성수사팀(가정폭력사건 수사, 360명), 총 2,841명
- ▶ 주요 내용
 - 가정폭력 사건처리 시 어려운 점 : 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난감하다 (29.7%) ②가·피해자 분리 후 피해자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25.3%)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 : ①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기관 일원화(35.0%)
 -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 ① 여성긴급전화 1366 (35.6%) ② 해바라기센터(27.9%)

그리하여 각 관서별로 1366센터·가정폭력상담소 등 각기 다른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담소 등과 협조가 잘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상담소 등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해 연계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연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 ▶ 나가서 여성긴급지원센터나 이런 데 전화를 해봤자 그쪽에서 출동식으로 나와서 도와준다는 이런 시스템은 없다. 모든 게 우리가 데려다 주고 상담 연계해주고 그쪽 자체는 모든 상담소가 안내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나마 전문가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 하에 전화해서 여건이 되면 나오셔서 진짜 심각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개입을 해서 피해자 진정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할 만한 전문가가 없거나 인력이 적은 것 같다(발제문)
- ▶ 관련된 기관은 많아요.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해 타기관이 뭘 얼마나 지원하는지, 달라졌는지 모르니깐 피해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요. 일부 기관들만 간담회나 솔루션 회의를 해요...그래서 가정폭력은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정보공유가 무척 중요해요(이경자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에 관한 질적 연구」 p.83)
- ▶ 가정폭력 언론에 터지는 거 보면, 뭐 다 경찰이 잘못했느니, 피해자가 신고 안해서 지속되었느니, 가해자가 문제라느니 그런 얘기만 해요. 정부 차원에서 다른 문제보다 중요한 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얼마나 해결 의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부족해요. 법도 불충분하지, 제도나 예산도 제대로 안되어 있지,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경찰이 다 해라, 피해자들한테 알아서 대처해라 이거잖아요. 왜 이 심각한 문제를 국가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지(이경자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에 관한 질적 연구」, p.84)

최근, 경찰은 폭력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거리·시간 등의 사유로 임시보호소(병원) 또는 숙소*에 피해자를 인도한 경우, 익일 학대예방경찰관이 피해자 지원기관을 안내, 연계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연계 시에 발생하였던 문제들을 개선하고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 ‘임시숙소’의 경우 모텔·여관 등이 다수였던 과거(‘14년)와는 달리, 현재에는 호텔, 콘도, 레지던스 등 안전성·건전성을 기준으로 재정비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피난처(1366센터)에 우선적으로 연계, 원거리에 있는 경찰서의 경우 임시숙소 연계는 지양하고, 임시보호소(병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경찰에서는 가정폭력과 더불어, 아동·노인학대 사건을 같이 취급하는 관계로 이에 대한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61개소)에 이를 통보하고, 아보전이라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초기상담·사례관리·보호시설 입소 등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1366센터, 상담소·보호시설 등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각각에 대한 연계를 경찰에서 판단하여 연계토록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특례법」上 현장출동·조사권 등 역할 수행)과 유사한 기관을 신설·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 발견 시 통일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에 연계, 이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개별 피해자 유형 등을 판단하여 그에 맞는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모니터링·상담 연계 거부 가정에 대한 관리 필요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피해자의 부동의’를 들고 있다.

※ 유관기관 연계 시 어려운 점 : (지역경찰) 피해자 부동의(42.8%) / (여청수사팀) 피해자 부동의(44.9%)

이는 「가정폭력특례법」상 피해자를 상담소 등에 연계 시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피해자 의사존중’ 규정으로 인해 신고가 다발하는 가정이나 피해자가 상담 등을 거부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경찰에서만 인지할 수 있을 뿐, 피해자 지원기관의 보호, 지원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

「아동학대특례법」의 경우,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만성화된 폭력피해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동의를 전제로 보호가 이루어지는 체제 하에서는 현재의 가정폭력 피해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경찰-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 상호 정보 공유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II. 맺으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찰-피해자 지원기관 간 역할 정립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매우 뜻깊게 느껴진다. 경찰(초기대응·사건수사)과 피해자 지원기관(피해자 보호·사후관리)이 상호 전문성을 갖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길임을 의심치 않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토 론 문

양수옥¹⁾

1. 가정폭력 초기대응 시 경찰과 지원시설 간 협업의 필요성(발제문을 중심으로)

1. 역할의 명료화

현재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산하에는 1366이 초기개입 기관으로 경찰과 함께 위기개입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또한 전달체계 내에서 역할이 혼재될 수 밖에 없다. 파출소에서 바로 1366에 연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2013년과 2014년 종합대책 초기에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한 후 파출소에서 피해자와 바로 연계되거나 현장 전화연결상담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경찰서별로 APO가 배치되면서 부터는 파출소에서 APO에게 보고되고 APO가 상담과 보호조치 등을 끝내고 연계장만 전달되는 상태이다. 초기에 1366과 연계가 되어야 긴급구호 및 심리적 안정과 지지 이후에 전문상담소 등에 연계가 가능하다. 경찰의 연계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2-3일 이후 심지어는 10일도 지난 연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다. 이는 피해자가 다른 전달체계에 연계되는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이후에 가족상담 등 여러 지원을 받고 안전망에 들어오는 창구가 막히게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초기 Gateway인 1366과 연계가 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와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해야 한다.

2. 경찰 현장실무자의 어려움

경찰네트워크 간담회에 1366간의 협업에 있어서 초기개입의 문제, 피해자 보호의 문제 등에 있어서 경찰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1366에 위기의 여성들이 초기에 심리적

1)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회장

지원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여성들의 자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연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한다.

경찰의 1급지 파출소의 경우 근무자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 가해자 지원을 할 수 있고, 군 단위 3급지의 경우 근무자가 2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출동 시에 파출소를 잠그고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3시간이 넘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찰관의 어려움이 있다.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환경적 요건들로 피해자들이 1366에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날 출근을 하는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이 인사불성의 음주상태이거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장애여성, 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는 여성들은 원거리에 1366에 떠넘기는 듯 한 연계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관과의 관계에 친절 불친절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가 한다.

3. 경찰 가정폭력 업무창구의 일원화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 중에 또 하나는 경찰청 자체에서도 가정폭력의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도 있다. 가정폭력 전담경찰관(APO)과 청문감사관실의 범죄피해자(이하 청감실) 조사관 등이 따로 지원을 하고 있다. APO는 대부분이 여성가족부산하의 피해자 지원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청감실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피)와 함께 지원을 하고 있고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1366에 의료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용이한 범피와 연계가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전달체계의 이해도

또한 여성가족부의 전달체계 중에 1366의 역할, 상담소의 역할, 보호시설의 역할 등의 이해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는 바로 여성가족부 산하 피해자지원기관의 전달체계가 혼선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다시 폭력이 반복될 경우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지 못한 단점으로 다시 피해자 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피해여성을 보호시설(쉼터)에 바로 연계를 하면 안 되는데 가까운 곳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 1366을 통하지 않고 바로 보호시설로 연계를 하고 있다. 하룻밤에서 2박 3일 정도 긴급피난을 보호시설로 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복수의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긴급피난은 반드시 1366에서 지원하는 긴급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쉼터에는 장기보

호 하는 피해자들이 위험을 피해있는 비공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밤에 내담자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쉼터에서는 불친절 할 수밖에 없다.

5. 1366의 인프라 구축의 미비(보호시설 연계의 어려움)

1366은 광역 시도별로 1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광역시 또는 도 전체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현장 대응하기에는 현재 인프라로는 불가능하다. (아동전문보호기관 도에 4개의 센터가 구축돼 있고, 응급차량이 구비되어 있고 가정폭력처럼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사례가 현저하게 적다)

첫째, 야간에 원거리에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가정폭력현장(파출소)에 출동할 인력이 현장 상담원 2명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긴급구호차량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구호에 있어서 경찰과 협업은 사실상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향후 직원들의 역량 교육을 통해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초기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II. 가정폭력 초기지원 시 경찰과 지원시설의 협업관련 개선방향

1.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강화

가정폭력 초기대응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이 명확해야 함은 분명하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지원기관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파출소 피해자 가해자 분리이후 보호조치 과정에서 임시숙소(모텔)에 보내기 전에 1366과 연계를 하고 이후에 지속 관리가 되도록 1366은 다시 전문상담소와 연계를 해야 한다. 특히나 현장조사에 있어서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피해자인 여성을 분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음을 불만을 토로한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분명해야 하며, 반드시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와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와 연계의 역할을 해야 한다. 1366은 연계받은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 이후에 다른 전달체계에 반드시 연계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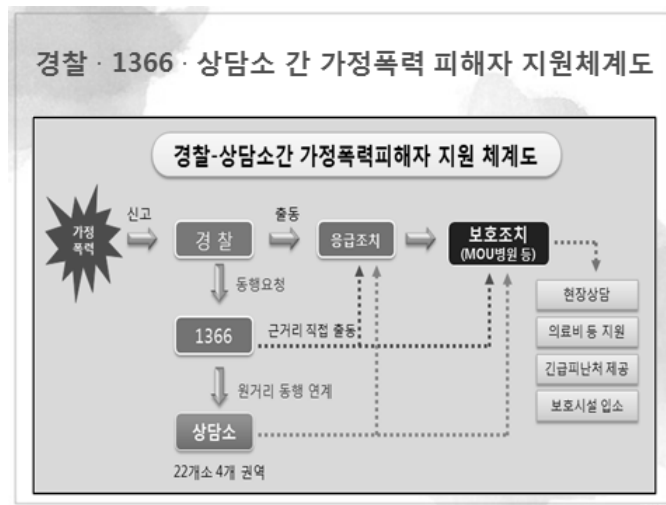
피해자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1366에 연계하고 익일 출근 등의 이유로 원거리 긴급피

난처 이용이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연계해야 하며, 1366은 반드시 이들을 긴급구호해야 한다.

2. 협업을 위한 역할분담

가. 경상북도의 협업구축

향후 1366은 위의 발제문과 같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요원하다. 이에 지역의 1366센터들은 지자체, 경찰청, 지역상담소와 역할분담 및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경상북도의 협업체계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시스템으로 경상북도에는 긴급피난처가 1366뿐만 아니라 상담소 7곳에 설치하여 가장 빠르게 구호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 야간에 일어나는 현장구호 및 현장상담은 가장 가까운 상담소에서 역할분담을 한 좋은 예이다.

나. 강원도의 협업구축

강원도 역시 지리적 환경적 요건이 산악을 중심으로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강원

1366에서는 자택근무 상담원을 양성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원거리에서 구호되는 피해자는 시청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긴급피난처를 지정하고 분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다. 제주, 부산의 협업 구축

제주는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많지가 않다. 때문에 피해자 긴급구호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상담소와 자택 근무자를 중심으로 현장출동 시스템을 구축해 가장 빠른 시간에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게 하였다.

3. 협업 역량 강화

2015년 2차에 걸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과 1366 상담원과의 직무교육 강화 및 협업 워크숍 개최로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의 협업을 통한 상호의 역할 문제점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갈등에 대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Ⅲ. 맺는말

초기 개입에 있어서 긴급구호 기관인 1366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경찰과 가장 먼저 만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초기개입에서부터 상담소, 보호시설 연계,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가정폭력은 날로 늘어나고 흉폭해지고 있다.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서 경찰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는 피해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산하의 지원기관들이 좀더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기센터인 1366이 한곳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

신속한 가정폭력피해자초기지원을 위한 경찰 - 피해자지원시설 협업 제언

유향순¹⁾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초기대응 시 경찰과 피해자지원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업’을 논한다는 것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포럼발제자의 발제내용 중 ‘협업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상호이해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부분에 매우 동감한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피해자지원을 하는 기관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기관의 정체성’부분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업무를 부여받고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진정한 협업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토론자는 ‘정체성’이라 함을 ‘~~~ 답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싶다. 즉, 경찰은 ‘경찰 답다’ 피해자지원기관은 ‘피해자지원기관 답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그 ‘기관의 정체성’은 가장 적절히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폭력초기지원시 경찰과 지원시설의 협업관련 개선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토론을 해보고자 한다.

1.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조정 및 연계협력 강화’ 부분 중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피해자지원단체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야한다’는 부분은 매우 중한 지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피해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보다는피해자를 의무적으로 지원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매우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한다.

1)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소장

2. ‘경찰과 지원기관과의 협업관련 개선사항’ 중 ‘나. 협업을 위한 제반여건마련 : 지원체계의 현장상담기능 강화’ 부분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피해자보호쉼터와의 연계’ ‘의료기관과의 연계’ ‘가정폭력예방 캠페인’ 등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진행하는 가정폭력상담의 성격은 일반상담에 비해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해야하는 성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담이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현장에서의 급박한 상황에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가정폭력상담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매우 편의적이고 소모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법조문에도 명시되어 있고, 현장 경찰의 요구사항도 있고 하여, 가정폭력상담소 입장에서, 현장상담 기능을 수행하고자한다면, 이에 대한 물적·인적 지원이 새롭게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

3.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가정폭력사건은 일반 사건에 비해 혈연에 기반을 두고 있고, 피해자·가해자를 구분해내기에도 어려울 경우가 있고, 가족구성원 간에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동보호사건이나 성폭력사건 등처럼, 가해자를 분리하고 처벌함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생활의 연속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치료·회복’시키는 상담을 하고, 동시에, 피해자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가정폭력가해자를 교정·치료’하는 상담프로그램도 진행하는 특수한 상담영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 및 피해자지원기관 등의 협업에도 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기관의 정체성’을 고려한 협업을 다시 거론하자면, 상담기관의 정체성은 ‘내담자보호 및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등이 우선되어야 하고, ‘피해자보호쉼터’등의 경우도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의 철저한 접근금지’등이 우선일진데, 그에 대한 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자 한다면, ‘기관의 정체성’ 등에는 매우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피해자지원을 위한 각 기관의 업무는 그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본다.

업무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위한 상호정보공유 등을 통해 재범률 등을 파악해내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기관의 성격 및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한다면,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상호정보공유를 강제하고자 함 등은 가정폭력지원기관현황을 고려하지 못한 적절치 못한 입안이 될 거라고 평하고 싶다.

결어

협업을 위해서는 각 전문기관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가정폭력상담소들은 이와 같은 협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종사자들의 소명의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현장의 열악한 상황(3인의 종사자, 열악한 임금구조) 등은 상담소종사자들의 열정만으로 그 ‘전문성’을 담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첨언하고 싶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해 내라’는 업무를 부여받은 상담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가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협업구조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신속한 가정폭력피해자초기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지원시설 협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임을 강력히 부연하고자 한다.



MEMO



MEMO

제2차 가정폭력 방지 월례 포럼

| 발행일 | 2017년 7월

| 발행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우 04505)

TEL : 02) 735-1050 / FAX : 02) 735-2051

<http://www.stop.or.kr>

| 인쇄처 | (주)선우정보인쇄

TEL : 02)2272-6105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